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김낙관 의원 외 14명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김낙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김낙관 · 강승수 · 권재욱 · 김영길
김재우 · 김춘남 · 박교상 · 송용자
안장환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의원(15인)

1. 제안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라. 특화거리 지정 기준 및 신청·취소 (안 제6조 ~ 안 제8조)
- 마. 지원사업 (안 제9조)
- 바. 특화거리 사업평가 (안 제10조)
-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6. 28. ~ 7. 5.)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거리, 상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설정
2.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발전 전략
4. 관련 자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화거리 지정기준)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포 업종 수와 관계없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5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신청)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구역(500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며,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객 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시민 및 이용객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 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특화거리 상인조직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 되어야 한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로 대체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유통

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시장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5조)
- 지원사업 (안 제9조)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의 시책 수립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안 제5조)
- 특화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 제9조),

○ 특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이 구성 되고, 특화거리로 지정된 후, 상인조직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야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함(안 제9조)

○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자료 작성, 참석자 수당과 여비 지급 등으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11조, 제 15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4,000
위원회 수당 및 여비	100,000원×10명×4회	4,0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담당 이정희 (054-480-2632)